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7,321,816	7,719,654
일반회계		212,677,780	6,380,333
특별회계		44,644,036	1,339,321
공기업특별회계		35,091,750	1,052,7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398,750	461,9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693,000	590,790
기타특별회계		9,552,286	286,569
	주택사업특별회계	6,600	1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6,238	29,287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1,820	4,25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68,751	20,063
	공업단지특별회계	891,267	26,73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09,532	198,2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5,000	6,15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5,768	473
	기반시설특별회계	37,310	1,1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98,56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